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 노인학대관련범죄 검찰 사건송치 등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72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29호)
- 곽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3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6
1.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 도입 등(김기웅의원안)	6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검찰 사건송치 의무화(김남희의원안)	15
3.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우선 보조(곽규택의원안) ..	21

I. 개요

1.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7. 27.
- (3) 회 부 일 : 2026. 7.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공기질·환기·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
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2.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6. 7. 29.
- (3) 회 부 일 : 2026.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3.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7. 30.
-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Ⅱ. 검토의견

1.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 도입 등(김기웅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공기질·단열 등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7조의5(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이하 “동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동행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u> <u>1.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 지원</u>

<신 설>

2.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

3.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

4.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동행지원사업의 대상·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행지원사업의 방법, 위탁 및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운영자 등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접수·수납, 진료·검사 및 의약품 수령 등 의료기관 이용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2026년 7월부터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동 사업은 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와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추가배치 간호(조무)사가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진료과정의 돌봄 및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용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시간 등에 따라 급여비용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적용됨.

개정안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요 >

○ 추진목적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안전한 병원동행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6. 7. ~ 12.
- (서비스 내용)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 병원동행 지원
- (수행주체)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내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조무)사
- (이용대상) ①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②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 *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같은 시도 내 위치
- (시범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한 지역
- (이용한도)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이용
- (급여비용) ①왕복 34,120원(180분 미만), 왕복 57,020원(180분 이상), ②기관 인센티브 월 10만원(5명 이상 제공), ③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 협약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기관이 병원동행 제공 시 왕복 10,000원(편도 5,000원, 본인부담 無)
- 주·야간보호 중 병원동행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병원동행서비스 제공 시간 모두 인정(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기타) 7.30. 서비스 제공 개시 후 11월 일괄 급여 청구 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소요 및 사업 수행 인력 확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법률인데, 제18조제2항에 특히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의 통합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음.¹⁾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이하생략)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경로당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경로당별 시설 노후도와 생활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경로당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으로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법 상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서²⁾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음. 2025년에는 총 1,779억 4,800만원이 해당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환경개선 등에 832억 8,500만원, 신축에 718억 9,100만원, 증·개축에 227억 7,200만원의 지원액이 편성되어,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약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25. 12. 31. 개정)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현황(2025년 3월) >

(단위 : 백만 원)

합계	신축비			증개축비			환경개선 등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177,948	71,891	6,804	65,087	22,772	1,195	21,577	83,285	9,141	74,145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경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지원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기존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신설하기보다는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³⁾에 관련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은 지역별 의료자원·교통여건 및 노인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 및 지원방식을 마련하고, 동행지원 인력이 진료·검사 과정에서 의료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의료기관 선택의 중립성 및 환자 유인 방지, 동행지원자의 자격·신원 확인 등에 관한 표준

3)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동행지원사업과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지자체 등 의견 >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동 서비스의 확대연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제18조제2항: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의 여건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개별 법률에 별도 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설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 동행서비스를 별도의 개별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기보다는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 마련을 통해 노인복지를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별도의 실태조사를 신설하기 보다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대한 의사협회	○ 신중검토 - 본 개정안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과 처방 의약품 수령 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의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생활환경 개선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령층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특히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한 이동 및 이용 과정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은 지역별 의료자원과 교통여건, 노인돌봄 인프라 등에 따라 수요와 적정한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운영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기준 및 지원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행지원사업의 범위에 접수·수납뿐만 아니라 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고,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동행지원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행지원 인력이 환자의 증상·판단·설명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료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와 환자의 사전 동의,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행지원자의 자격·신원 확인 등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동행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용이 편중되거나 환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선택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동행지원 인력의 역할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행지원사업 및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경로당의 냉난방·공기질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건강 기능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역할 확대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와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인의 의료접근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방식과 동행지원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업무 범위, 의료기관 선택의 중립성 확보 및 환자 유인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및 재원 확보 방안,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검찰 사건송치 의무화(김남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u> <u>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이들 사건의 실체를 보다 충실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함.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찰 수사의뢰·고발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수사의뢰 건수	131	137	146	88	122	624
고소·고발 건수	13	10	20	5	6	54

*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된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임.

※ 2026년 노인학대 관련 현황은 2027년 6월 공표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범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외에도 검사가 사실관계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본회의의결 2020. 1. 13. / 공포 2020. 2. 4.)에 따라 신설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를 확인하고⁵⁾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는⁶⁾ 등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가정폭력범죄⁷⁾ 및 아동학대범죄⁸⁾의 경우 이미 개정안과 유사하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사한 취지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사건송치 의무를 규정하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96)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⁰⁾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¹¹⁾이 성평등가족위에, 「장애인복지법」¹²⁾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에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임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6호)

1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7호)

1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31호)

12)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8호)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등 유사 입법례와 행위자 범위 등 제도적 차이가 있고, 범죄의 유형·경중 및 불송치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필요적 송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필요적 송치 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신고·진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노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검찰로의 사건 송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정안이 유사 입법례로 제시한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는 행위자 범위가 제한*되는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와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 실제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행위자 범위 : 아동학대처벌법(보호자), 가정폭력처벌법(가정구성원), 노인복지법(제한 없음) - 또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유형과 경중, 불송치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필요적 송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법률과 정합성 및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신중검토 -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학대관련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하게 취약계층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26.8.4.)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절차 마련 없이 단순히 노인학대관련범죄 송치 조항만을 입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우선 지원

(곽규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u>第47條(費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老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u>	<u>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¹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¹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음.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로, 전남·경북·강원·경남·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사도	지정 지역	개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합계		89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 지정

- 1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 청년 인구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충분히 확충·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일상생활 및 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 제4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우선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¹⁵⁾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우선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법 제13조는

15)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⁶⁾ 제1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¹⁸⁾ 각 시설별로 설치주체, 이용대상, 재원구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상이하므로, 실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큰 시설의 유형을 파악한 후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등 재정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7) 제18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8)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2025.12월말 기준)

구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계	283	6,211	71,309	19,146	40	223	20
서울	25	484	4,094	2,567	5	21	1
부산	7	125	2,641	1,124	3	16	1
대구	7	264	1,914	937	2	8	1
인천	16	509	1,647	1,413	2	12	1
광주	2	107	1,443	808	1	5	1
대전	7	157	893	644	1	5	1
울산	2	69	884	364	1	7	1
세종	2	21	532	80	-	1	0
경기	100	2,135	10,634	4,038	6	28	3
강원	14	329	3,472	876	3	15	1
충북	20	312	4,328	611	2	13	1
충남	8	349	6,049	805	2	15	1
전북	14	243	6,987	838	2	18	1
전남	19	321	9,313	1,046	2	14	2
경북	24	435	8,258	1,201	4	18	2
경남	14	280	7,721	1,618	2	25	1
제주	2	71	499	176	2	2	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를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별 노인인구 규모와 노인학대 신고·상담 등 복지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여부만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지자체 의견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신중검토 - 인구감소 지역의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보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외에도 노인인구 규모 및 복지 수요(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 현장조사, 상담 등)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 단일 지역 기준만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인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해 보임
서울북부	○ 수정수용 1. 의견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 인구 집중 지역(수도권 등)의 급증하는 인권·학대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보조 대상 적용 제외(예외 지정)가 필요함. 2. 세부 의견 및 검토 사유 - 지방재정 및 복지 인프라 열악성 공감 ·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지방재정 한계 극복을 위한 우선 지원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함. - 수도권 및 노인인구 밀집지역의 학대 신고·개입 수요 급증 · 수도권 등 노인인구 밀집지역은 절대적인 노인 인구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단순 이용·거주 시설 제공이 아닌 24시간 학대 대응, 긴급 출동, 법적·전문적 개입 등 공공적·시급성이 매우 높은 업무임. ·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조 혜택이 집중될 경우, 가장 많은 학대 사례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및 밀집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동결될 우려가 있음. · 이는 곧 인력 부족 및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져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실패 및 보호의 공백 발생으로 직결될 수 있음. 3. 건의사항 (조문 수정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및 학대 발생 수요에 직접 연동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개정안 적용 대상 시설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하거나 예외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인구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규모, 서비스 이용수요, 보호대상 규모 및 지역별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별도의 자원 확대 없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경우, 노인인구 및 복

	지서비스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실제 복지수요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부산서부	○ 일부수용 -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체 인구 감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 여부, 복지시설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강원남부	○ 수용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정책접근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보조함으로써, 서비스 지원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임. -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시설과 신규설치시설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광역단위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광역차원에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시 우선 지원을 고려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고령친화도시 등 노인관련 인증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적 접근 또한 정책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충북북부	○ 수용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보조를 통해 사회 인프라가 열악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됨. 이외 기타 의견 없음.
전북	○ 수정수용 -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는 편이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로 우선 보조하지 않도록 그에 적절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노인복지시설 수요와 기존의 시설의 부족정도를 함께 파악하여 내용이 반영되면 개정취지에 타당하다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99